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. 7. 15 선고 2020가단51 판결 [공사대금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유한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7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5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장성진

별지